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80

발의연월일: 2024. 6. 21.

발 의 자:이재관·강준현·이정문

양부남 • 박정현 • 복기왕

문진석 • 이병진 • 윤종군

오세희 • 박희승 • 황명선

허성무 · 정동영 · 민홍철

이연희 · 장종태 · 이워택

송재봉 • 전재수 • 김정호

용혜인 · 문금주 의원

(23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 지정된 특례시 4곳 중 3곳이 수도권 도시로 비수도권은 1곳에 불과해 수도권 집중 요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비수도권의 경우 인구감소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례시의 기준을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으로 하며, 비수도 권은 인구 50만 이상으로 인구 기준을 하향하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 시가 없는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98조제2항). 법률 제 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
 -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지역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 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다만, 인구 30만 이상인 수도권 외 지 역의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지방자 치단체의 경우 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
 - 다. 행정안전부장관이 나목에 해당하는 대도시가 관할구역 내에 없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 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의 도시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8조(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제198조(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① (생 략)	인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	②		
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대도시 및 시ㆍ			
군・구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			
<u>1.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u>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하 "특례시"라 한다)	해당하는 대도시(이하 "특례		
	시"라 한다)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지역의 인구 100만 이상		
	<u>대도시</u>		
	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다만, 인구 30만		
	이상인 수도권 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

다. 행정안전부장관이 나목에 해당하는 대도시가 관할구역 내에 없는 시·도지사와 함의하여 지정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 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의 도시

- 2. (현행과 같음)
- ③ (현행과 같음)

2. (생략)

③ (생 략)